

2002. 12.

條例案審查報告書

○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

產業建設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	2002. 11.30	11.30	12.7	12.7	도로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1) 제안이유

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

2) 주요골자

-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안전도 검사업무 관련 규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- 게시시설의 관리위탁(안 제8조)
-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(안 제9조)
-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(안 제11조, 제12조)
- 과태료,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(안 제14조,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, 안전도검사업무 관련사항, 게시시설의 관리위탁,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,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, 과태료, 이행 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이 법령의 범위에서 수립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- 조례상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중 구성인원 및 당연직의 지정 여부, 위원의 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됨

4. 질의.답변 요지

▶ 질의 :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는?

- 답변 : 수안보 지역임

▶ 질의 : 방음벽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지?

- 답변 : 법 제4조, 제5조에 의해 방음벽 또는 방호벽에는 금지

▶ 질의 :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?

- 답변 : 위원회 수당 관련조례에 의거 지급하겠음

▶ 질의 : 전주, 가로등주의 광고물 수수료가 타도시 보다 요율이 낮은데 비교.검토해 보았는지?

- 답변 : 검토하겠음

▶ 질의 : 개인 건물에 게시하는 현수막중 공공성이 수반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을 중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?

- 답변 : 개인 건물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임

▶ 질의 : 각종 행사시 불법 설치되는 애드벌룬, 선전탑 등의 광고 물은 조례 제정후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인지?

- 답변 :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

5. 심사결과

-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-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부